

학칙 시행세칙

제정 1986. 1. 1.
개정 2024. 6. 20.
학사지원과 031-467-077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 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함)은 본 대학 학칙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제2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으로 본 대학에서 수강하는 재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을 뜻한다.

제3조(신입학) ① 신입생의 선발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입학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매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

제4조(재입학) ① 안양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 26조(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학칙 제 28조, 5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 5. 14.>

② 재입학자의 학점은 허가된 학년·학기 이전에 이수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③ 재입학자의 성적경고는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의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 3. 1.>

④ 재입학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적(평점 평균) 상위자.

2. 성적이 동일한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⑤ 위의 항 이외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학기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28.>

제5조(편입학) ①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에서 정하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자라야 한다.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1항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 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한 학부(과)(전공), 학년의 해당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한다.

1.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편입학하는 3학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하며 학적부에는 “전적대학 ○○학점인정”으로 기재한다. 단, 2017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중 전적대학 2학년 수료학점이 본교 수료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공 30학점과 잔여학점을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 2. 23., 2019. 2. 20.>

구분	2016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17~2018 학년도 편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교양	40	36	35
전공	30	30	30
합계	70	66	65

2. 편입학 한 학년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 중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편입학한 이전학년의 전공 교육과정 중 해당 학부(과)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0.>
3. 편입학자는 졸업 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4. 편입학자는 자기설계,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과정 이수 및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사범계열 편입학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2020. 5. 14.>
- ⑤ 학사 편입학자는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공에 관계없이 학칙에 따로 정한 학부(과)외에 어느 학부(과)나 지원할 수 있다.
- ⑥ 편입학자는 학칙 시행세칙 별표 1 「졸업학점 이수기준표」에서 정한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양의 경우는 지정한 교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개정 2015. 2. 23., 2019. 2. 20.>
- ⑦ 전적대학에서 “기독교의이해(기독교개론)”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16학년도 편입자까지는 본교에서 “기독교의이해”, “성서의이해” 과목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2017학년도 편입자부터는 “기독교개론”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학대학 편입자는 구약개요, 신약개요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17. 1. 23., 2022. 1. 26.>
- ⑧ 편입학자는 전적대학의 채플 이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두 번 이상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⑨ 2020학년도 편입학자 부터는 전공에서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20.>

제6조(편입학의 취소)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 및 자격이나 제출된 증명서의 허위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또한 이 경우에 기 납입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원 외 입학) ① 정원 외 입학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09. 3. 1.>

- ② 삭제 <2009. 3. 1.>
- ③ 삭제 <2009. 3. 1.>
- ④ 삭제 <2009. 3. 1.>
- ⑤ 삭제 <2009. 3. 1.>
- ⑥ 삭제 <2009. 3. 1.>

제 3 장 전부.전과 및 전공배정

제8조(전부.전과) ① 전부·전과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단, 자유전공과 계열별자유전공 입학생은 학과가 배정된 이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허용범위 내에서 전부·전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 24., 2016. 5. 16., 2022. 1. 26., 2024. 6. 20.>

1. 일반학부(과)로의 전부·전과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개정 2015. 8. 24., 2016. 5. 16., 2024. 6. 20.>
2. 사범계 학과로의 전부·전과는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범위 내) <개정 2010. 3. 1., 2015. 8. 24.>

② 특정 학과로 전부·전과 희망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부·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이수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하고, 전부·전과하고자 하는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3. 10., 2011. 4. 10., 2015. 8. 24., 2016. 5. 16., 2024. 2. 21., 2024. 6. 20.>

④ 주·야간 전부·전과는 허용하나 학부로 입학한 경우 및 동일학과(전공)로의 전부·전과는 학년 별·모집단위별 입학정원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19. 2. 20., 2020. 5.14.>

⑤ 삭제 <2021. 2. 25.>

⑥ 삭제 <2012. 12. 7.>

⑦ 편입으로 입학한 학생의 전부·전과는 3학년 1학기 이상 3학년 2학기 이하 이수자에 한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

⑧ 삭제 <2024. 6. 20.>

⑨ 학과의 모집정지로 인한 경우는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특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1.>

⑩ 신설학과의 경우 학년, 학기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하위 학년, 학기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0.>

제9조(학부입학생의 전공배정) ① 학부에 입학하여 전공을 정하지 않은 학생은 제1학년 과

정을 마친 후 전공을 배정 받아 제2학년 1학기부터 전공이수를 하여야 한다. 단 학제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5. 14.>

② 1항의 경우 1학년 2학기말에 전공배정신청서를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별 배정(변경)기준 및 인원은 학부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입학당시 배정된 전공이 있는 경우는 해당 전공으로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15. 8. 24.>

제 4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0조(등록금 징수방법)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및 제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개정 2013. 8. 28.>

② 정규학기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 수와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납부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8.>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한 자가 동일 학년·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휴학 시와 복학시의 등록금 차액만 납부 한다. <개정 2008. 7. 1.>

④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휴학한 자가 동일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복학당시 등록금 전체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완료 후 수업일수 3/4이내에 군입대한 자의 경우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8. 7. 1., 2021. 2. 25.>

⑤ 9학기 이상 등록자의 등록금은 전액 등록을 원칙으로 졸업 잔여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 잔여학점 외에 채플이 남은 경우는 1강좌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2015. 8. 24., 2019. 2. 20., 2021. 2. 25.>

1. 졸업 잔여학점이 1~3학점인 경우 : 등록금의 1/6
2. 졸업 잔여학점이 4~6학점인 경우 : 등록금의 1/3
3. 졸업 잔여학점이 7~9학점인 경우 : 등록금의 1/2
4. 졸업 잔여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 등록금 전액
5. 채플 및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중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만 남은 경우 : 등록금의 1/10 <개정 2021. 2. 25.>

6. 졸업논문 : 등록금 면제

⑥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포함)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3. 8. 28.>

제10조의2(징수기일) 등록기간은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본 등록기간은 매 학기 개시일 전 10일간, 추가 등록기간은 학기 개시 후 5일간 수납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전 60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28.]

제10조의3(분납제도) ①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분납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직전학기 분납등록금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신청할 수 없다.

② 계절수업, 신·편입생 첫 학기는 분납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14.>

③ 분납을 승인 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각 차수별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 한다.[본조신설 2013. 8. 28.]

제10조의4(등록금 반환사유) ①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 <개정 2021. 2. 25.>

④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3. 8. 28.]

제10조의5(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항목에 구분하여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③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본조신설 2013. 8. 28.]

제1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해당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자유선택,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다전공, 자기설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 23., 2020. 5.14.>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하여도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상급학년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조기졸업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예외로

한다.

3. 1, 2학년은 교양필수 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4학년은 학점이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5. 15학점 미만 이수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4학년은 예외로 한다. (6학점 이상). <개정 2015. 2. 23.>
6. 편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본 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편입학한 학기 이후의 교과목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사과정에서 6학기(3학년 2학기)이상 등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은 7학기 이후 수강신청과 함께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수업을 재학 중 6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희망자는 대학원 교학과와 수업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한다. <개정 2015. 8. 24.>
2. 수강할 교과목이 학사과정의 전공과 같을 경우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며, 다른 전공 교과목일 경우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3.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되,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취득교과목이 B+이상이어야 하며,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수강신청 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6.>

제12조(수강신청의 효력)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과목이나 유사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청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은 15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학년은 최저 6학점, 유아교육과와 기독교교육과의 편입 및 복수전공자는 3,4학년에 한해서 최대학점을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채플, 사회봉사 및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예외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채플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신학대학은 3학점, 일반대학은 2학점으로 제한하며 졸업유보자는 학점이 부여된 채플을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07. 3. 1., 2013. 2. 13., 2015. 2. 23., 2018. 3. 5., 2021. 2. 25., 2022. 1. 26.>

②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최소학점(채플, 사회봉사 및 교육봉사활동 제외) 이상이고 취득성적이 4.0 이상인 자는 최대 신청학점에 3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2019. 2. 20., 2021. 2. 25.>

③ 삭제 <2007. 3. 1.>

④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거나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교무처에서 임의로 교양

선택, 전공선택, 자유선택 과목 순으로 적은 학점단위로 취소한다.

⑤ 군 휴학 중인자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0.>

⑥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학점 이상이고 최대학점 이하일 경우 그 잔여학점을 이월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1. 3. 1., 2013. 2. 13., 2015. 2. 23., 2019. 2. 20.>

1. 이월된 학점은 학기별 최대 3학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2. 삭제 <2013. 2. 13.>

3. 삭제 <2013. 2. 13.>

4. 수강신청학점 이월 제외대상

가. 성적경고를 받은 자 <개정 2012. 8. 27.>

나. 삭제 <2019. 2.20.>

다. 총장이 예외로 정한 자 중 21학점 수강신청 대상자 <개정 2015. 2. 23., 2017. 5. 15.>

라.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 미달자

마. 9학기이상 등록 자 <개정 2019. 2. 20.>

제14조(수강) ①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② 강의시간표상 중복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③ 삭제 <2022. 1. 26.>

④ 필수과목 미이수로 인한 졸업유보자는 유보 학기에 해당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휴학 후 개설학기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9. 2. 20., 2022. 1. 26.>

제15조(주·야간 수강교류) 주·야간 교류 수강신청은 교양선택에 한하여 허용하고 전공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3. 1., 2017. 1. 23., 2017. 5. 15.>

제16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합반, 분반, 폐강, 강의 시간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 중에 직접 변경한다. <개정 2017. 1. 23.>

②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고 수강한 성적이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강의 포기 및 철회)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낙제(F) 처리된다.

② 등록한 학기에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당해 학기의 등록회수에 포함하고 성적경고 대상이 된다.

③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학년별 최소학점 미만으로는 철회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9., 2015. 2. 23., 2019. 2. 20.>

제18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

가능한 성적은 A이하로 한다.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란에 기재한다. <개정 2015. 5. 12.>

② 교과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2.>

③ 재수강 전에 취득한 성적은 R(Renounce)로 표기하며, 해당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개정 2015. 5.12.>

제19조(수강제한) 교무처에서 특별히 규정한 교과목 또는 과락인 교과목의 재이수시 시간표 중복 이외에는 주야 각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대체과목) 폐지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이수구분에 따라 아리교양대학장 또는 해당 학부(과)장을 경유한 대체과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9. 2. 20., 2021. 2. 25.>

제 5 장 수업

제21조(강의시간표) ① 교무처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강의시간표를 확정, 공고한다. 또한, 수업시간의 단위는 1개 교시를 50분간으로 한다. <개정 2007. 3. 1., 2015. 8. 24., 2017. 1. 23.>

② 작성된 강의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제22조(출석 점검) ① 출석은 매 교시 점검하여 성적에 반영하며 해당 교과목에 1/4 초과 결석한 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1., 2016. 11. 9., 2017. 1. 23.>

② 출석확인 방법은 직접호명, 지정좌석제, 전자출결 등의 방법으로 하며 출석부에 수업일자(보강시 보강일자 기재) 및 출결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3.>

③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출결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0.>

제22조의2(결석의 허용 한계) ① 결석은 한학기 동안 과목단위로 주당 수업시간의 4배 미만까지 허용하며 주당 1시간 과목은 3시간, 주당 2시간 과목은 7시간 주당 3시간 과목은 11시간, 주당 4시간 과목은 15시간까지 허용한다.

② 온라인·오프라인 강의가 병행되는 과목은 출결사항을 구분하여 점검한다.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하며, 출결 파악 후 시간 중 퇴실한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6 장 교과

제23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정) ① 교양교육과정 안은 아리교양대학에서 편성하고, 전공 교육과정 안은 학부(과)별로 편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7., 2013. 12. 4., 2020. 5. 14.>

②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양과목은 아리교양대학장이, 전공과목은 각 대학장이 발의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한다. <개정 2012. 8. 27., 2013. 12. 4., 2020. 5. 14., 2021. 2. 25.>

③ 매 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하며, 강의는 수업계획서에 의한다. 교과목별 담당교수 배정은 교양과목은 아리교양대학장이,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전공)의 학과장이 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8. 27., 2020. 5. 14.>

④ 교과목의 개설은 수강신청 인원이 교양과목 20인 이상, 전공과목 10인 이상인 경우, 또는 학부(과) 재학인원의 35%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개정 2013. 8. 28., 2016. 2. 26.>

⑤ 과목명, 이수구분, 학기 등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2항의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표를 변경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4.>

⑥ 강의실 배정은 수용능력과 수강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한다.

⑦ 수강인원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반 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3.>

1. 이론과목 : 50명 이상 (단, 교과목에 따라 대단위 강의를 개설함) <개정 2017. 1. 23.>

2. 실험·실습과목 : 30명 이상 <개정 2012. 8. 27., 2017. 1. 23.>

3. 회화 과목 : 20명 이상 <개정 2017.1. 23.>

[제목개정 2020. 5. 14.]

제23조의2(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자기설계로 구분한다. <신설 2017. 1. 23., 2020. 5. 14.>

1. 삭제 <2021. 2. 25.>

2. 교양은 6대 핵심역량으로 구성하며 전공은 기초역량과 심화역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2.25.>

제24조(강의시간 배정) 전임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에 걸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교원 책임시간) 교원 책임시간은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

제26조(교과이수) ① 학년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 23., 2020. 5. 14.>

1. 삭제 <2017. 1. 23.>

2. 삭제 <2017.1.23.>

3. 삭제 <2017.1.23.>

- ② 필수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선택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 ③ 삭제 <2020. 5. 14.>
- ④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삭제 <2021. 2. 25.>
- ⑥ 삭제 <2021. 2. 25.>
- ⑦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0.>
- ⑧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선택은 최소 3개 역량에서 각각 2과목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공자, 사범계열간 복수전공자, 사범계열 학생 중 일반학과로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는 교양선택 3개 역량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편입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23., 2020. 5. 14., 2021. 2. 25.>
-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2017학번부터 2019학번 입학자 중 2020학년도 2학기 이전에 사범계열간 복수전공 및 사범계열 학생 중 일반학과로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별표 1 「졸업학점 이수기준표」에서 교양선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20. 5. 14., 2021. 2. 25.>

제27조(사회봉사 학점) ① 정부 및 지방자치 행정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실시한 사회봉사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 3. 1.>

- ② 사회봉사 학점의 이수는 재학중 한 학기로 제한하고, 이론교육 3시간과 별도의 1일 8시간 이내에서 총 48시간 이상 봉사한 경우에 2학점을 P(패스)로 부여한다. <개정 2012. 3. 1.>
- ③ 사회봉사 학점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9. 5. 10.>
- ④ 사회봉사 학점을 신청한 학생은 학점의 이수를 위하여 반드시 자원봉사 신청서, 봉사활동일지, 소감문, 봉사활동 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2. 8. 27.>
- ⑤ 삭제 <2019. 2. 20.>
- ⑥ 사회봉사 과목은 9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2. 3. 1., 2019. 2. 20.>

제28조(계절수업) 학칙 제35조 1항에 의한 계절수업 개설의 시기, 교과목,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교류학점) 재학 중 총장이 승인하는 국내의 대학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경인지역 대학(교)간 학부 학점교류 시행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8. 1. 1., 2009. 9. 8.>

제30조 삭제 <2019. 5. 10.>

제30조의2(군복무중 인정 학점) ① 병역법에 의하여 입역 또는 복무로 휴학(군휴학자)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점을 교양선택 P(패스)로 인정한다.

② 1항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수증명서를 복학한 학기의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학사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③ 병역법에 의하여 입역 또는 복무로 휴학(군휴학자)중인 자가 본교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5. 8. 24.>

[본조신설 2013. 8. 28.]

제30조의3(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학점) ① 입학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이수증명서를 입학한 당해연도에 한해 개강후 1주일 안에 학사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학점인정은 교양선택 P(패스)로 총 6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28.]

제31조(현장실습(인턴십) 학점) ① 재학 중 일정학점 범위 안에서 Pass(패스)로 부여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현장실습(인턴십)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8. 24.>

② 청소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을 1항에 관계없이 2회에 걸쳐 6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청소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8. 24.>

제31조의2(해외인턴십) ① 본교에서 주관 하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18학점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공학점은 최대 6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2013. 3. 1.>

③ 해외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소속학과장을 경유하여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1., 2020. 5. 14.>

④ 졸업학기에는 해외인턴십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다.

⑤ 인턴십 학점은 해당 학생이 해당 기업의 평가서 등을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국제교류원을 경유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3. 3. 1., 2020. 5. 14.>

⑥ 해외인턴십의 평가는 학생의 보고서와 해당기업의 평가서를 통해 P(pass)또는 F(fail)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0. 3. 10.]

제31조의3 삭제 <2015. 8. 24.>

제 7 장 시험과 성적

제32조(시험, 성적평가 및 평가표 제출) ① 시험은 교과목의 평가를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

고사 및 수시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상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4. 2. 21.>

③ 각 교과목의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초과 결석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 3. 1., 2021. 2. 25.>

④ 시험은 반드시 수강 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성적의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및 과제 80%, 출석 20%를 반영하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및 실점표는 학칙 제50조와 같다. <개정 2024. 2. 21.>

⑥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전 학년 전 과목을 대상으로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1.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A등급(A+,A)은 수강인원의 40%이하, A등급(A+,A)과 B등급(B+,B)의 합은 80%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12. 8. 27., 2012. 12. 7., 2013. 8. 28., 2024. 2. 21.>

2. 교직원 관련 교과목, 음악학부의 실기 교과목, 계약학과 교과목, 기타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A등급(A+,A)을 수강인원의 30%로 제한한다. <개정 2013. 8. 28., 2024. 2. 21.>

3.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개설된 10명 미만의 교과목은 수강인원의 50%까지 A등급(A+,A)을 부여 할 수 있다. 단, 수강생 1명인 과목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8., 2019. 5. 10., 2024. 2. 21.>

4. 교환학생은 별도로 평가하며, 전공실기 및 총장이 승인한 교과목에 한해 등급부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3. 8. 28., 2014. 5. 29., 2019. 5. 10.>

⑦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적을 부여하고 당해 학기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⑧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무처장이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응시원(증빙서류 첨부)을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시험 후 정해진 날에 실시하며, 추가시험에 불응시한 자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

1. 질병, 병무, 직계가족의 사망

2. 기타 부득이한 사유

② 수시시험, 기말시험 중 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어느 하나만을 응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응시한 성적만을 과제, 출석성적과 합산하여 평가인정할 수 있다.(출석일수 미달자 제외)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입대휴학자의 성적평가) ① 총 수업일수 3/4이후에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시시험, 과제, 출석 등을 고려하여 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② 삭제 <2019. 2. 20.>

③ 총 수업일수 3/4이전에 입대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 2. 20.>

④ 삭제 <2019. 2. 20.>

제35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

①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그 해당과목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 및 그 이후의 전 과목 성적

③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④ 삭제 <2020. 5. 14.>

⑤ 수강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한 성적

⑥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36조(성적게시) 평가된 성적의 성적표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3.>

제37조(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학기 지정된 기간에 담당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타당한 경우 성적을 정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제38조 삭제 <2014. 2. 21.>

제39조(유고 결시자의 성적인정) ① 각종 시험에 결시한 자의 유고결시 인정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유고 또는 준유고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유고결시자의 경우에는 학기 중 1회 응시한 성적으로 평가하되, 유고로 판정된 자는 100%, 준유고로 판정된 자는 80%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학기 중 2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단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제로 처리한다 <개정 2019. 2. 20.>

제40조(성적의 보존관리) 학기말에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보고서는 학적부에 등재하고 성적 보고 사본, 시험 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 자료는 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9. 5. 10.>

제41조(성적경고) ① 학칙 제29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 하고, 본인 및 보호자와 학부(과)장에게 통지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성적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③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특별지도 및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상담한 결과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 8. 24.>

제42조(유급) 성적불량자 중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입학정원과 졸업정원 100%이내에서 적용한다.

- ① 유급은 당해 학년말에 실시하고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지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② 유급 해당자는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

제4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일반 휴학한 학생의 교과목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성적산출) ① 성적의 산출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단, 패스과목은 계산에서 제외 시킨다. <개정 2015. 8. 24.>

1. 평점평균 :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설 2015. 8.24.>

$$\frac{\text{각 과목별(학점수} \times \text{평점)의 합계}}{\text{총신청학점수}}$$

2. 백분위평균 :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설 2015. 8.24.>

$$\frac{\text{각 과목별(학점수} \times \text{백분위점수)의 합계}}{\text{총신청학점수}}$$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학점*평점의 합이 높은 자 <개정 2019. 5. 10.>
 2. 백분위 평균이 높은 자 <개정 2019. 5. 10.>
 3. 이수 학점수가 많은 자 <개정 2019. 5. 10.>
 4.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 <개정 2019. 5. 10.>
 5. 연장자 순위
- ③ 삭제 <2015. 8.24.>

제 8 장 휴학, 복학, 퇴학

제45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휴학은 입대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하며,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수행을 위한 경우이고, 일반휴학은 그 이외의 경우로 한다.

③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대영장 사본을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으로 인

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2차 진료기관이상이 발행한 4주이상 요양을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7. 5. 15.>

④ 입대휴학은 의무복무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며,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9학기 이상 등록하는 재수자로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의 개설학기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한학기간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신입, 편입으로 등록하는 학생의 첫 학기는 가정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⑦ 휴학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질병, 직장전보, 제적사유, 창업 등)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⑧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 질병 휴학, 지도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8. 4. 1., 2011. 11. 1., 2012. 3. 1., 2013. 12. 4., 2014. 12. 2.>

⑨ 여학생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학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3.12. 4.>

⑩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창업휴학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

제46조(휴학원 제출시기) ① 휴학원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대,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학중인 자가 입대할 경우 휴학원서는 입대일 기준 전·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제47조(휴학취소) ①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총 수업일수가 1/4 이내인 경우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② 일반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개강전 까지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제48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종결된 학생은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3.>

② 입대휴학자가 개강 후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역 예정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 2019. 2. 20.>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복학 시 입대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수업일수 1/4이전 휴학자. <개정 2008. 7. 1.>

- 2. 총 수업일수 1/4이상 경과 후라도 공적사유(국가, 기타 공적업무)로 부득이 휴학한 자. <개정 2008. 7. 1.>
- 3. 수업일수 3/4이전에 군입대한 자. <개정 2008. 7. 1.>
- 4. 수업일수 3/4이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자. <신설 2013. 12. 4.>
- ④ 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복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3. 12. 4.>
- ⑥ 조기복학은 군휴학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이외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자퇴) ①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원서를 지도교수, 대학장 승인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② 기말고사기간 이전에 자퇴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20., 20. 5. 14.>

제 9 장 졸업, 진급, 수료, 학적부

제50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1> 「졸업학점 이수기준표」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교육과정 및 졸업심사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2. 23., 2015. 8. 24., 2019. 2. 20., 2021. 2. 25.>

② 졸업논문(또는 대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수료한 자는 재적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졸업논문을 이수한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2019. 2. 20.>

제51조(복학생 졸업학점)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입학 할 당시의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0. 5. 14.>

제52조(수료 인정학점) 수료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3., 2019. 2. 20.>

구분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1학년	35	33	33
2학년	70	66	65
3학년	105	99	98
4학년	140	130	130

제53조(학적부 기재) ① 본 대학 학생의 인적사항, 학업성적, 특기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하여 보관하며, 각종 제증명의 발행은 학적부에 준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 퇴학, 제적, 휴학, 복학 등의 학적변동 사항 및 특기사항은 소정란에 기재한다. <개정 2020. 5. 14.>

제 10 장 학력조회

- 제54조(학력조회)** ① 편입생의 학력은 입학허가 즉시 전적대학에 조회하여야 한다.
- ② 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을 행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학력조회에 대한 응신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회보한다.

제 11 장 증명발급

- 제55조(증명발급)** ①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국문 이외에 영문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 본 세칙 제52조 해당자
 5. 졸업증명서
 6. 졸업예정증명서 : 8학기 이상 등록자로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7. 성적증명서
 8. 기타 학적확인증명서
- ②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시행일) 본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효력) 본 대학교에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제규정 중 본 규정에 규정한 조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3.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1997학년도 입학자에게는 '97학년도부터 신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6.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신교육 과정이 개설되는 학년(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복학한 학년(학기)의 신교육 과정을 이수하되, 복수전공 및 다전공은 불허한다. 또한, 졸업학점 및 교과목 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교양 및 전공최저 이수학점은 교양 42학점, 전공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또한, 1999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편입학한 학생의 교양 및 전공학점도 이와 같으며, 필수과목 과락시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8.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7학년도 입학자에게는 신교양교육과정을 적용하고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교양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단, 교과목 명칭 및 학점은 일부 신교양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정별 최저이수학점은 교과목의 학점변동으로 인해 개편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이 부족하더라도 종전의 규정대로 교과목 이수 및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18.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1.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2.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33.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4.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5.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6.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37.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체 재적생을 대상으로 2014년 2월중 학점포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 외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8.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9. 본 개정 시행 세칙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졸업학점 130학점의 적용은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 시행한다.

구분		~2014학번까지	2015학번부터~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학점	1학년 ~ 3학년	최소 18학점 ~ 최대 21학점	최소 15학점 ~ 최대 18학점
	4학년	최소 9학점 ~ 최대 21학점	최소 6학점 ~ 최대 18학점
	수료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최대 70학점 인정	최대 66학점 인정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캠퍼스간 유사전공의 전과제한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강화캠퍼스	안양캠퍼스 전과 제한 학과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공공행정학과	행정학과
융합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 시행세칙 [별표 1] <개정 2024. 2. 21.>

졸업학점 이수기준표(제26조제1항 관련)

<2024학번부터>

구분		교필	교선	주전공	자기설계	부전공	복수 (연계) 전공	다전공	소단위	교직	졸업 학점
일반 학과	심화전공	14	25	75							130
	자기설계	14	25	60	15						130
	복수(연계) 전공	14	25	48			42				130
	부전공	14	25	60		21					130
	다전공	14	12	36			36	36			134
	소단위	14	25	66					9		130
일반 교직 이수자	융합트랙	14	25	66							130
	교직전공	14	25	66						23	130
	복수(연계) 전공	14	12	60			42			23	151
	부전공	14	12	60		21				23	130
	소단위	14	12	60					9	23	130
사범계 (기교/ 유교)	융합트랙	14	12	60						23	130
	교직전공	14	25	66						23	130
	사범계간 복수전공	14	12	66			50			25	167
	일반학과로의 복수(연계)전공	14	12	60			42			23	151
	일반학과로의 부전공	14	12	60		21				23	130
	소단위	14	12	60					9	23	130

※융합트랙 이수자는 타전공의 트랙을 1개 이상 이수해야 함
[2021학번부터] [삭제 2024. 2.21.]

<2018 - 2023학번>

구분		교필	교선	주전공	자기설계	부전공	복수 (연계) 전공	다전공	교직	졸업 학점
일반학과	심화전공	14	25	75						130
	자기설계	14	25	60	15					130
	복수(연계)전공	14	25	48			42			130
	부전공	14	25	60		21				130
	다전공	14	12	36			36	36		134
일반교직 이수자	전공	14	25	66					23	130
	복수(연계)전공	14	12	60			42		23	151
	부전공	14	12	60		21			23	130
사범계 (기교/유교)	전공	14	25	66					23	130
	사범계간 복수전공	14	12	66			50		25	167
	일반학과로의 복수(연계)전공	14	12	60			42		23	151
	일반학과로의 부전공	14	12	60		21			23	130

<2017학번>

구분		교필	교선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교직	졸업학점
일반학과 (사범계 제외)	심화전공	14	25	66					130
	복수(연계)전공	14	25	48		42			130
	부전공	14	25	60	21				130
	다전공	14	12	36		36	36		134
	교직과정 이수자	14	25	66				23	130
사범계 (기교/유교)	전공	14	25	66				23	130
	사범계간 복수전공	14	12	66		50		25	167
	일반학과로의 복수전공	14	12	60		36		23	145
	일반학과로의 부전공	14	12	60	21			23	130

<2016학번>

구분			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교직	졸업학점
			공통필수	대학필수	영역별선택						
일반학과 (사범계 제외)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강) 환경경영(강)	단일전공	15	3	15	66					130
		복수전공	15	3		66	36				130
		부전공	15	3	12	66		21			130
		다전공	15	3		36	36		36		130
	이공대학 예술대학 해양바이오(강)	단일전공	15	6	12	66					130
		복수전공	15	6		66	36				130
		부전공	15	6	9(디미디:12)	66		21			130
		다전공	15	6		36	36		36		130
	컴퓨터학과(강)	단일전공	18	3	12	66					130
		복수전공	18	3		66	36				130
		부전공	18	3	9	66		21			130
		다전공	18	3		36	36		36		130
사범계 (기교/유교)	단일전공	15	3	9	66				23	130	
	사범계간 복수전공	15	3		66	50			25	159	
	일반학과로의 복수전공	15	3		66	36			23	143	
	일반학과로의 부전공	15	3		66		21		23	130	

<2015학번>

구분			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교직	졸업 학점
			공통 필수	대학 필수	영역별 선택						
일반학과 (사범계 제외)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강) 환경경영(강)	단일전공	17	3	15	66					130
		복수전공	17	3		66	36				130
		부전공	17	3	12	66		21			130
		다전공	17	3		36	36		36		130
	이공대학 예술대학 해양바이오(강)	단일전공	17	6	12	66					130
		복수전공	17	6		66	36				130
		부전공	17	6	9(다미 디:12)	66		21			130
		다전공	17	6		36	36		36		131
	컴퓨터학과 (강)	단일전공	20	3	12	66					130
		복수전공	20	3		66	36				130
		부전공	20	3	9	66		21			130
		다전공	20	3		36	36		36		131
사범계 (기교/유교)		단일전공	17	3	9	66				23	130
		복수전공	17	3		66	50			25	161

<2013-2014학번>

구분			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교직	졸업 학점
			공통 필수	대학 필수	영역별 선택						
일반학과 (사범계 제외)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도시행정(강) 환경경영(강)	단일전공	17	3	21	66					140
		복수전공	17	3	15	66	36				140
		부전공	17	3	21	66		21			140
		다전공	17	3	12	36	36		36		140
	이공대학 해양바이오(강) 예술대학	단일전공	17	6	18	66					140
		복수전공	17	6	12	66	36				140
		부전공	17	6	18	66		21			140
		다전공	17	6	9	36	36		36		140
	컴퓨터학과 (강)	단일전공	20	3	18	66					140
		복수전공	20	3	12	66	36				140
		부전공	20	3	18	66		21			140
		다전공	20	3	9	36	36		36		140
사범계 (기교/유교)		단일전공	17	3	12	66				23	140
		복수전공	17	3	6	66	50			25	167